

제267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무료법률상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유승용 의원 대표발의】



2026. 2. 2.

행 정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무료법률상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경 과

의안 제636호로 2025년 11월 7일 유승용 의원 외 4명으로부터 발의되어 2025년 11월 1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법률상담관의 해촉 규정을 신설하여 법률상담 서비스의 책임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구민이 보다 안정적으로 무료법률상담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며, 법률상담의 범위에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사회적 약자 보호에 이바지하고자 함. 또한 현행 법령 체계에 맞지 않거나 어문 규정에 어긋나는 표현을 모범적으로 정비하여 보다 명확하고 일관성 있는 제도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상담 범위에 아동·청소년 권리 신설(안 제4조)
- 나. 법률상담관 해촉 규정 신설(안 제7조의2)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 다. 입법예고(2025.11.7.~11.13.) 결과: 의견 없음

5. 검토의견

○ 주요 내용에 대한 검토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4조 및 별지 서식에서 법률상담의 범위에 아동·청소년 권리를 추가하며, 안 제7조의2에 법률상담관 해촉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함.

○ 종합의견

- 안 제4조 법률상담 범위에 아동·청소년 권리를 신설하는 것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지방자치법」 제13조1)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에 아동·청소년의 보호와 복지증진에 관한 사업이 포함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단체가 법률복지 증진을 위하여 법률구조 관련 정책이 원활하게 시행되도록 협력할 책무를 가짐이 「법률구조법」 2)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본 조례안 개정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또한 안 제7조의 2에 법률상담관 해촉 근거 규정 신설과 관련하여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민사·형사·가사사건에 관한 무료

1)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주민의 복지증진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라. 노인·아동·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2) 제2조의2(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① 국가는 국민의 법률복지 증진을 위하여 법률구조 체제를 구축·운영하고, 법률구조 관련 법령의 정비와 각종 정책을 수립·시행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할 책무를 진다.
-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법률구조 시책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법률상담 지원 업무를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로서 타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조례 입안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며,

- 행정안전부의 위원회 해임 및 해촉 기준과 관련한 법령입안심사 기준³⁾ 검토 결과, 해촉 사유에 스스로 직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직무태만·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해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등을 규정할 수 있다고 하였으므로 이를 준용한 해촉 사유로 여겨져 개정 타당성이 인정됨.

3) 출처: 법령입안심사기준(위원회 위원의 해촉사유_ 행정안전부)

제○조(위원의 해촉) ○○부장관(또는 ○○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屬)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 개별 위원회 특성에 따라 해촉 사유 추가 가능

참 고 자 료

1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주민의 복지증진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라. 노인·아동·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제28조(조례)

-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2 법률구조법

제2조의2(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① 국가는 국민의 법률복지 증진을 위하여 법률구조 체계를 구축·운영하고, 법률구조 관련 법령의 정비와 각종 정책을 수립·시행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할 책무를 진다.